아트투게더 서비스이용약관 개정 대비표

(■등재 위치: 홈페이지 메인 하단 > 서비스이용 약관)

현 행	개 정(안)
제 1 장 총칙	**제1장 총칙**
제 1 조 (목적) 본 이용약관(이하 '약관')은 투게더아트(이하 '회사')가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(이하'서비스')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의 권리,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	제1조 (목적) 본 이용약관(이하 '약관')은 **주식회사** 투게더아트(이하 '회사')가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(이하 '서비스')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의 권리,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용어의 정의)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 ①~⑤(생략) 6. 물품 : 미술품와 같이 예술가들이 예술활동을 통하여 제작한 결과물로서 사이트에서 거래하기 위하여 제공된 작품을 의미합니다. 7. (생략) 8. 위탁자 : 본인의 물품을 회사의 공동구매 또는 경매 등의 서비스를 통해 판매하고자 회사에 판매를 위탁하는 회원을 말합니다. 9. (생략) 10. 렌탈 : 회사가 물품소유자의 물품을 렌탈이용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. 11. 렌탈이용자 : 렌탈이용자는 물품을 전시공간에 전시하는 등의 목적으로 렌탈하는 주체를 말합니다.	제2조 (용어의 정의) 본~~(삭제)~~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 ①~⑤(현행과 같음) ⑥ 물품 : 미술품와 같이 예술가들이 예술활동을 통하여 제작한 **결과물 및 기타 거래가 가능한 동산으로써** 사이트에서 거래하기 위하여 제공된 작품을 의미합니다. ⑦ (현행과 같음) ⑧ 위탁자 : 본인의 물품을 회사의 공동구매 또는 경매 등의 서비스를 통해 판매하고자, 회사에 **물품의** 판매를 위탁하는 회원을 말합니다. ⑨ (현행과 같음) ⑩ 렌탈 : 회사가 **물품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기초하여** 물품소유자의 물품을 렌탈이용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. ⑪ 렌탈이용자 : **렌탈이용자는(삭제)** 물품을 전시공간에 전시하는 등의 목적으로 렌탈하는 주체를 말합니다.
제3조 (약관의 명시와 개정) ①~⑦(생략)	제3조 (약관의 명시와 개정) ①~⑦(현행과동일)
제 4 조 (관련 법령과의 관계) ① (생략) ②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민법,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, 소비자 기본법,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, 개인정보 보호법,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,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 약관의 규정을 들어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.	제4조 (관련 법령과의 관계) ① (현행과 동일) ②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민법,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, **소비자기본법**,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, 개인정보 보호법,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,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 약관의 규정을 들어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.
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 등	**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등**
제 5 조 (서비스의 제공)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1. 공동구매 서비스 : 회사는 직접 선정하거나 판매를 위탁 받은 물품을 사이트에 소개하고 회원은 이를 공동으로 구매하여 해당 물품의 공동소유(공유)할 수 있습니다. 2~4.(생략) 5. 아트몰 서비스 : 위 1 호 내지 4 호의 서비스들과는 별도로 아트상품에 대한 판매를 통하여 회원이 쉽게 예술품을 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6. (생략)	제5조 (서비스의 제공)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① 공동구매 서비스 : 회사는 직접 선정하거나 판매를 위탁 받은 물품을 사이트에 소개하고 회원은 이를 공동으로 구매하여 해당 **물품을** 공동소유(공유)할 수 있습니다. ② ~ ④(현행과 같음) ⑤ 아트몰 서비스 : 위 1호 내지 4호의 서비스들과는 별도로, **회사는 아트상품의** 판매를 통하여 회원이 쉽게 예술품을 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⑥ (현행과 동일)

제 6 조 (서비스 이용계약) ① (생략) ② 회원은 회원가입 시 회사가 지정한 본 약관에 대한 동의 양식에 표시함으로써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 가입의 완료는 회사와 회원 간 서비스 이용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의미하므로 본 약관의 효력이 적용됩니다. ③ (생략)	제6조 (서비스 이용계약) ① (현행과 동일) ② 회원은 회원가입 시 회사가 지정한 본 약관에 대한 동의 양식에 표시함으로써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 **회원** 가입의 완료는 회사와 회원 간 이용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의미하며, **회원가입 이후에는** 본 약관의 효력이 적용됩니다. ③ (현행과 동일)
제 7 조 (회원가입 신청 및 개인정보보호 등) ①~ ② (생략) ③ 회사는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에게 별도 또는 추가적인 가입절차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러한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, 규정 또는 세칙 등이 이 약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. ④ (생략) ⑤ 회사는 회원가입 신청이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이용 가능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회원가입 신청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실명확인절차를 취할 수 없는 회원가입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⑥ (생략)	제7조 (회원가입 신청 및 개인정보보호 등) ① ~ ② (현행과 동일) ③ 회사는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에게 별도 또는 추가적인 가입절차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러한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, 규정 또는 세칙 등이 **~~이~~(삭제)**약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. ④ (현행과 동일) **⑤ (삭제)** ⑥ (현행과 동일).
제 8 조 (회원가입 신청의 승낙) ① 회원가입 신청자가 회사가 정한 필수 기재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이 약관에 동의한 경우, 회사는 개인식별확인절차를 거쳐 서비스의 이용을 승낙합니다. ② 회사는 회원가입 신청이 있는 경우, 법령에 따라 이용 가능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휴대전화번호와 성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실명확인절차를 밟으며, 사업자 회원가입 신청의 경우에는 제 7 조에 따라 제공받는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개인식별확인절차를 밟습니다. 회사는 개인식별확인절차를 밟을 수 없는 회원가입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자에게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, 회원가입 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 1. 실명확인절차 또는 개인식별확인절차에서 개인식별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2~6.(생략) ④ (생략) 1~3.(생략) 4. 사업자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가 제 7 조에 따른 증빙자료 또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5. (생략) ⑤ (생략)	제8조 (회원가입 신청의 승낙) ① 회원가입 신청자가 회사가 정한 필수 기재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**~~이~~(삭제)** 약관에 동의한 경우, 회사는 개인식별확인절차를 거쳐 서비스의 이용을 승낙합니다. ② 회사는 회원가입 신청이 있는 경우, 법령에 따라 이용 가능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**회원가입 신청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** 회사는 휴대전화번호와 성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실명확인절차를 **밟되, 이러한** 개인식별확인절차를 밟을 수 없는 회원가입 **신청 또는 사업자 회원가입**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자에게 **~~추가~~(삭제)**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**있고, 이에 따라 제공받는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.**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, 회원가입 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 1. **제8조 제2항에 따른 절차에서 본인 여부**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2. ~6.(현행과 동일) ④ (현행과 동일) 1. ~3. (현행과 동일) 4. 사업자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가 **제8조에** 따른 증빙자료 또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5. (현행과 동일) ⑤ (현행과 동일)
제 9 조 (이용계약의 종료) ①~②(생략)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1. (생략). 가. 회원에게 본 조 제 2 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용계약의 승낙거부 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나~라.(생략) 2. (생략)	제9조 (이용계약의 종료) ① ~ ② (현행과 동일)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1. (현행과 동일) 가. 회원에게 **제8조 제3항**에서 정하고 있는 **회원가입 신청에 대한 승낙 거부** 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나. ~라.(현행과 동일) 2. (현행과 동일)

3.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, 회사는 별도의 통지 없이 해당 회원과 관련된 구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	**3. 회원이 이용계약 해지 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물품을 구매한 경우, 해당 회원은 회사로부터 이용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 받는 즉시 자신이 구매하였던 물품의 공유지분을 회사에게 매각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본 호에 따른 물품 공유지분의 매매가격은 회원과 회사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되,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회원의 물품 최초 구매가격을 매매가격으로 합니다.**
④ 회사는 본 조 제 3 항제 1 호다목에 따른 행위가 적발될 경우, 당해 회원은 회사에게 직거래 예상가격의 20%에 해당하는 위약벌을 지급하여야 합니다.	④ **회원은 본 약관에 동의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한 뒤에는** 본 조 제3**항 제1호 다목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 이에 위반하여 회원이** 본 조 제3항 제1호 다목의 행위**를 할 경우**, 당해 회원은 회사에게 직거래 예상가격의 20%에 해당하는 위약벌을 지급**하고 본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거래의 상대방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.**
⑤~⑦(생략)	⑤ ~⑦ (현행과 동일)
제 3 장 공동구매 서비스의 이용	**제3장 공동구매 서비스의 이용**
제 10 조 (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) ① 회사는 공동구매 서비스의 특성, 구매절차 및 매각방법에 대한 사항을 사이트를 통하여 공지합니다. 회원은 회사가 공지한 각 구입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. ② 회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통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고, 물품의 소유권을 원하는 비율만큼 구매할 수 있습니다. ③ 제 2 항에 따라 물품을 구매한 회원은 그 소유권을 민법 262 조에 의거하여 공유(공동소유)의 형태로써 취득합니다.	제10조 (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) ① 회사는 공동구매 서비스의 특성, 구매절차 및 매각방법에 대한 사항을 **사이트 또는 회원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**을 통하여 공지합니다. 회원은 회사가 공지한 각 구입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. ② 회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통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고, **물품을** 원하는 비율만큼 구매할 수 있습니다. ③ 제2항에 따라 물품을 구매한 회원은 그 소유권을 민법 **제**262 조에 의거하여 공유(공동소유)의 형태로써 취득합니다.
④(신설)	**④ 공동구매 서비스를 통하여 물품을 구매함에 따라 회원에게 제공되는 권리증(CERTIFICATE OF OWNERSHIP)은 유가증권 기타 어떠한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으며, 위 권리증은 회원이 약관 및 유의사항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공동구매 서비스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였음을 확인하는 문서에 해당합니다. 또한, 회사는 권리증을 보유(보관)하고 있는 자를 물품의 소유자로 간주하거나 추정하지 않으며, 물품소유자는 권리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.(신설)**
⑤~⑥ (생략)	⑤ ~⑥(현행과 동일)
⑦ (신설)	**⑦ 회사는 공동구매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, 물품의 원소유자로부터의 취득가격(경매에서의 낙찰가격 등)을 해당 회원에게 공개하기로 하며, 이를 통해 공동구매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해당 가격을 확인한 뒤 물품의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.(신설)**
제 11 조 (회사에 대한 관리위탁) ① 공동구매 서비스 또는 조각거래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물품소유자는 회사에게 다음의 권한을 부여합니다.	제11조 (회사에 대한 관리위탁) ① 공동구매 서비스 또는 조각거래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물품소유자는 회사에게 다음의 권한을 부여합니다. **특히, 회원은 서비스를 통하여 물품을 구매함으로써, 회사가 물품 구매 이전에 진행한 물품에 관한 경매 응찰, 물품 원소유자와의 계약 체결 기타 부수절차를 각 물품소유자의 대리인으로서 진행한 것임을 추인하고, 회사에게 본 항 제1호 및 제5호의 대리권을 소급적으로 부여(위임)합니다.**
1. (신설)	1. **물품소유자의 대리인으로서 물품에 관한 경매에 응찰하거나 물품의 원소유자와 물품의 매매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**

2. ~3.(생략)] 4. 위 각 호를 위한 부수절차 및 그에 대한 대리권	**결할 권한(신설)** 2. ~ 3. (현행과 동일) 4. 위 각 호를 위한 부수절차 및 그에 대한 대리권
② (신설)	**②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위임받은 수탁자로서 행사하며, 회원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외에는 물품에 대한 소유권 등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아니합니다. (신설)**
③ (생략)	③ (현행과 동일)
④ (신설)	**④ 물품소유자는 사이트에서 직접 처분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, 물품소유자 모집 단계에서부터 보관기간을 명시하는 물품의 경우, 당해 물품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보관기간 종료 후 회사가 물품의 매각을 시도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**
⑤ (신설)	**⑤ 물품 거래의 특성상, 회사는 이미 매각 시도를 동의 받은 물품들에 대해 각 매각 대상과 방법 등 세부 조건이 정해졌을 경우, 물품소유자로부터 추가적인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의성실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. 회원은 서비스를 통하여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회사에게 본 항에 따른 관련 업무를 수행할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합니다.**
⑥ (신설)	**⑥ 회사는 물품을 매각한 금액에서 사전에 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수익금을 회원의 소유비율에 따라 배분하며, 회원에게 물품의 판매금액 및 수익률 등을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.**
⑦(신설)	**⑦ 회사의 파산 등의 사유로 물품을 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품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분배합니다. 명확히 하기 위하여, 회원은 회사에게 본 조 제1항 제4호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본 항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(신설)**
제 12 조 (회원의 공동구매 서비스 이용) ①~ ②(생략) ③ (신설)	제12조 (회원의 공동구매 서비스 이용) ① ~ ② (현행과 동일) **③ 공동구매 서비스를 통하여 구매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회원에게 귀속되며,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권리를 갖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.(신설)**
제 13 조 (위탁자의 공동구매 서비스 판매위탁) ① ~ ⑤(생략)	제13조 (위탁자의 공동구매 서비스 판매위탁) ① ~ ⑤(현행과 같음)
제 14 조 (공동구매 서비스 플랫폼이용료 및 제세금) ① 회사는 공동구매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플랫폼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. 1. 공동구매 서비스 플랫폼이용료 : 각 물품소유자에게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 되면, 회사는 물품금액에 대하여 플랫폼이용료를 산출·수취합니다.(신설).	제14조 (공동구매 서비스 플랫폼이용료 및 제세금) ① 회사는 공동구매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플랫폼이용료를 **수수료로** 부과할 수 있습니다. **1.** 공동구매 서비스 플랫폼이용료 : 각 물품소유자에게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면, 회사는 물품 구매금액에 대하여 플랫폼이용료를 산출·수취합니다. **공동구매 서비스 플랫폼이용료의 액수는 물품 구매금액의 1~10%로 하며, 구체적인 공동구매 서비스 플랫폼이용료는 해당 물품의 공동구매 진행 시 사이트 내에 공시합니다. (신설)**
2.매각 플랫폼이용료 : 회사는 각 물품의 처분 시, 공동구매로 인한 구입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익에 대하여 플랫폼이용료를 산출·수취합니다. (조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취득한 물품소유자에 대한 플랫폼이용료도, 해당 물품이 처음 공동구매로 구입된 구입가액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).	2. 매각 플랫폼이용료 : 회사는 각 물품의 처분**(매각)** 시, 공동구매로 인한 구입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익에 대하여 플랫폼이용료를 산출·**수취하며, 매각 플랫폼이용료의 액수는 구입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익('매각차익'이라 합니다.)의 10%로 하되, 물품의 종류 및 거래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경우 사이트에 공지 하거나 기타 회원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시합니다.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,** 조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취득한 물품소유자에 대한 플랫폼이용

② (생략) ③ 회사는 필요한 경우 플랫폼이용료 항목을 신설하거나, 플랫폼이용료 금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, 구체적인 플랫폼이용료율, 항목의 신설 또는 변경사항은 회사가 사이트의 <공지사항> 란을 통하여 공지합니다. ④ (생략) ⑤ (신설)	료도, 해당 물품이 처음 공동구매로 구입된 구입가액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. ② (현행과동일) ③ 회사는 필요한 경우 플랫폼이용료 항목을 신설하거나, 플랫폼이용료 금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, **약관에서 정하는 플랫폼이용료를 포함한** 구체적인 플랫폼이용료율, 항목의 신설 또는 변경사항은 회사가 사이트의 <공지사항> 란을 통하여 공지합니다. ④ (현행과 동일) **⑤ 본 조에 따라 부과되는 플랫폼이용료는 회사가 공동구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가로 수취하는 위탁수수료이며, 회사가 회원들에게 물품을 소개하고 물품소유자들의 자산을 운용하는 대가로 수취하는 운용보수가 아닙니다.(신설)**
제 4 장 경매 서비스의 이용 제 15 조 (생략) 제 16 조 (위탁자의 경매 서비스 판매위탁) ① (생략) ② **제 1 항에도 불구하고** 회사는 물품의 진위여부에 관하여 시비의 우려가 있는 경우, 위탁자와 회사간에 물품에 대한 내정가 (회사와 위탁자가 비공개를 원칙으로 사전에 합의한 최저 낙찰가를 말합니다)를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, (신설) , 그 위탁 접수를 **제한할** 수 있습니다. ③ 회사가 판매위탁된 물품을 경매서비스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이 사실을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위탁자는 그 통보를 받은 후 5 일 안에 물품을 인수해야 합니다. 위탁자의 인수지연 중에 발생하는 물품의 훼손, 분실 등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, 회사의 통보 후 7 일 경과 후에는 회사 **규정의 보관료가 징수됩니다.** ④ ~ ⑤ (생략) 제 17 조 (경매의 실시 및 물품의 매매) ① ~ ⑤ (생략) ⑥ 회원이 … (중략) … 어떠한 오류나 **누락에** 대해서도 회사는 그 사유를 불문하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 ⑦ (생략) 1. 회사는 응찰과 관련하여 어떠한 오류가 발생하거나 응찰의 유효성에 대하여 응찰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, 낙찰자를 **결정, 응찰 절차를 진행, 경매를 취소 그리고 재경매할 수 있습니다.** 2. 경매물품의 진위여부 또는 경매의 유효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, 회사는 경매물품을 경매에 부치지 않거나 응찰 절차를 **중단** 또는 경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 3. (생략) ⑧ ~ ⑨ ⑩ 전 항에 따라 계약이 성립하면, 회사는 낙찰자에게 해당 물품에 대하여 직접 또는 전자통신망 등(e-mail, SNS 등을 포함)의 방법으로 낙찰확인서를 제공합니다. 낙찰자가 낙찰확인서를 제공받았음에도	**제4장 경매 서비스의 이용** 제15조 (현행과 동일) 제16조 (위탁자의 경매 서비스 판매위탁) ① (현행과 동일) ② ~~**제1항에도 불구하고(삭제)**~~ 회사는 **(i)** 물품의 진위여부에 관하여 시비의 우려가 있는 경우, **(ii)** 위탁자와 회사간에 물품에 대한 내정가(회사와 위탁자가 비공개를 원칙으로 사전에 합의한 최저 낙찰가를 말합니다)를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, **(iii) 기타 회사가 경매 서비스 제공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**, 그 위탁 접수를 **거부할** 수 있습니다. ③ 회사가 판매위탁된 물품을 경매서비스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는 경우**, 회사는** 이 사실을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위탁자는 그 통보를 받은 후 5일 안에 물품을 인수해야 합니다. 위탁자의 인수지연 중에 발생하는 물품의 훼손, 분실 등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, 회사의 통보 후 7일 경과 후에는 회사 **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보관료가 징수됩니다.** ④ ~ ⑤ (현행과 동일). 제17조 (경매의 실시 및 물품의 매매) ① ~ ⑤ (현행과 동일) ⑥ 회원이 … (중략) … 어떠한 오류나 **누락(고의에 의한 오류나 누락은 제외)에** 대해서도 회사는 그 사유를 불문하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 ⑦ (현행과 동일) 1. 회사는 응찰과 관련하여 어떠한 오류가 발생하거나 응찰의 유효성에 대하여 응찰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, 낙찰자를 **회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거나, 경매를 취소하고 재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**. 2. 경매물품의 진위여부 또는 경매의 유효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, 회사는 경매물품을 경매에 부치지 않거나, 응찰 절차를 **중단하거나**, 또는 경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 3. (현행과 동일) ⑧ ~⑨ (현행과 동일) ⑩ 전 항에 따라 계약이 성립하면, 회사는 낙찰자에게 해당 물품에 대하여 직접 또는 전자통신망 등(e-mail, SNS 등을 포함)의 방법으로 낙찰확인서를 제공합니다. 낙찰자가 낙찰확인서를 제

그에 대하여 명시적 이의를 즉시 제기하지 않는 경우 낙찰확인서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	공받았음에도 그에 대하여 명시적 이의를 즉시 제기하지 않는 경우 낙찰확인서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⑪ ~ ⑬ (생략)	⑪ ~ ⑬ (생략)
제 18 조 (경매 서비스 플랫폼이용료, 위탁플랫폼이용료, 제세금) ① 회사는 경매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플랫폼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. 1. (생략) 2. 낙찰 플랫폼이용료 지연이자 : 낙찰자가 납입기일까지 회사에 위 금액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, 납입기일(불산입)부터 연체대금 및 가산된 이자를 실제 납입하는 날(산입)까지 플랫폼이용료의 2%가 지연이자로 **매 월** 가산됩니다. 3. (생략) 4. 낙찰 철회 위약금 : 낙찰자가 낙찰을 취소하는 경우, 낙찰가에 대하여 **위약벌을** 부과합니다. ② **물품을 매각하는** 경우, 물품소유자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세금을 부담합니다. ③ (생략) ④ (신설)	제18조 (경매 서비스 플랫폼이용료, 위탁플랫폼이용료, 제세금) ① 회사는 경매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플랫폼이용료를 **수수료로** 부과할 수 있습니다. 1. (현행과 동일) 2. 낙찰 플랫폼이용료 지연이자 : 낙찰자가 납입기일까지 회사에 위 금액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, 납입기일(불산입)부터 연체대금 및 가산된 이자를 실제 납입하는 날(산입)까지 플랫폼이용료의 2%가 지연이자로 **매일 일할** 가산됩니다. 3. (현행과 동일) 4. 낙찰 철회 위약금 : 낙찰자가 낙찰을 취소하는 경우, 낙찰가의 일정 비율을 **위약금으**로 부과합니다. ② **경매 서비스를 통해 물품이 매각되는 경우, 물품을 매각한 위탁자는**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세금을 부담합니다. ③ (현행과 동일) **④ 본 조에 따라 부과되는 플랫폼이용료는 회사가 공동구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가로 수취하는 위탁수수료이며, 회사가 회원들에게 물품을 소개하고 물품소유자들의 자산을 운용하는 대가로 수취하는 운용보수가 아닙니다.**
제 19 조 (구매대금 납부와 물품의 인도) ① (생략) ② (생략) 1. 청구서에 기재된 총 대금 **및 청구서가 낙찰자에게 발송된 이후에 발생한 낙찰자 비용** 2. 청구서가 낙찰자에게 발송된 이후에 발생한 낙찰자비용 ③ 전항의 비용과 관련하여,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 일 이내(**3 억이상일 경우** 21 일 이내)에 회사에 위 금액을 완납합니다.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으며 낙찰자가 납입기일까지 회사에 위 금액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, 납입기일 익일부터 연체대금 및 가산된 이자를 실제 납입하는 날까지 낙찰 플랫폼이용료의 2%가 지연이자로 **매 월** 가산됩니다. ④ (생략) ⑤ 물품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 채무 또는 판매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각 물품의 낙찰일로부터 **7 일 이내에** 낙찰총액을 낙찰자로부터 완납 받지 못하는 경우, 회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, 다음의 조치는 법에 의해 허용되는 회사의 다른 권리나 구제조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 1. ~5. (생략) ⑥ 낙찰자는 회사와의 사전 서면 합의로 해당 물품의 낙찰일로부터 7 일 이내(낙찰일 불산입)에 다음 각호의 조건 하에 **경매를** 취소할 수 있습니다. 1. 회사에 서면으로 **경매취소**의 의사표시 2. (생략) ⑦ 회사는 물품의 낙찰자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에게만 물품을 인도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**7일** 이내(낙찰일 불산입)에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자신이 매수한 물품을 직접 또는 권한	제19조 (구매대금 납부와 물품의 인도) ① (현행과 동일) ② (현행과 동일) 1. 청구서에 기재된 총 대금 **~~및 청구서가 낙찰자에게 발송된 이후에 발생한 낙찰자 비용(삭제)~~** 2. 청구서가 낙찰자에게 발송된 이후에 발생한 낙찰자비용 ③ 전항의 비용과 관련하여,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**(청구서에 기재된 총 대금이 3억 이상일 경우** 21일 이내)에 회사에 위 금액을 완납합니다.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으며 낙찰자가 납입기일까지 회사에 위 금액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, 납입기일 익일부터 연체대금 및 가산된 이자를 실제 납입하는 날까지 낙찰 플랫폼이용료의 2%가 지연이자로 **매일 일할** 가산됩니다. ④ (현행과 동일) ⑤ 물품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 채무 또는 판매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각 물품의 낙찰일로부터 **7일 이내(청구서에 기재된 총 대금이 3억 이상일 경우 21일 이내)에** 낙찰총액을 낙찰자로부터 완납 받지 못하는 경우, 회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, 다음의 조치는 법에 의해 허용되는 회사의 다른 권리나 구제조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 1. ~5. (현행과 동일) ⑥ 낙찰자는 회사와의 사전 서면 합의로 해당 물품의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(낙찰일 불산입)에 다음 각호의 조건 하에 **낙찰을** 취소할 수 있습니다. 1. 회사에 서면으로 **낙찰 취소**의 의사표시 2. (현행과 동일) ⑦ 회사는 물품의 낙찰자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에게만 물품을 인도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**7일(청구서에 기재된 총 대금이 3억 이상일 경우 21일)** 이내(낙찰일 불산입)에 자

있는 대리인을 통해 인수합니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물품을 인도하지 아니합니다. 1. 낙찰자가 지급해야 하는 총대금을 회사에 **하자 없이** 완납하지 않은 경우 2. (생략) ⑧ 회사는 낙찰된 **물품에 대하여** 낙찰일로부터 낙찰자가 인수할때까지 **물품을** 무료로 보관합니다. 다만, **전항에서** 정한 기간이 초과된 이후에는 낙찰자가 그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. ⑨ 낙찰자가 회사에 대금을 완납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위 기간 이내에 물품을 인수하지 않은 경우, 낙찰자는 매 물품마다 위 기간이 초과된 날로부터 인수될 때까지 보관료(당사가 운영하고 있는 보관을 위한 창고의 1 일 이용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), 보관이 이루어지는 창고까지의 운송수수료, 보험수수료 등을 부담합니다. ⑩ (생략) 제 20 조 (운송과 보험) ① (생략) ② 위탁자는 … (중략)… 위탁자의 책임과 비용 부담 하에 **보험가입은** 대행할 수 있습니다. ③ ~ ④ (생략) 제 21 조 (응찰자와 **낙찰자** 의무) ① (생략) ② 물품은 경매 시점에 '있는 그대로' 출품하므로, 응찰자는 경매 이전에 물품의 훼손 그리고 또는 복원을 포함한 **경물품**의 상태 및 경매도록 등에 제공된 사항에 대해 시연, 착용, 관찰, 문의 등을 통해 상세히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. ③ **회사가** 사이트 또는 전시회에서 물품의 상태 및 속성과 관련해 제공하는 설명과 물품이미지(도판)에 대하여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… (생략) … ④ (생략) **제 5 장 렌탈 서비스의 이용** 제 22 조 (렌탈 서비스의 내용) ① 회사는 공동구매 서비스 또는 조각거래 서비스를 통하여 구입이 완료된 물품에 관하여 **물품소유자들에게** 권리를 위임 받아 별도 렌탈이용자와 물품을 유료 또는 무료로 렌탈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. ② 회사는 공동구매 서비스로 구입이 **완료된** 물품들에 한해서만 렌탈 서비스를 진행합니다. ③ 렌탈이용자와 회사가 유료로 렌탈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하며, 이 경우 회사는 발생한 수익 중 회사의 **플랫폼이용료를** 제한 나머지 금액을 물품소유자가 보유한 소유권의 비율에 비례하여 예치금으로 지급합니다. ④ (신설)	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자신이 매수한 물품을 직접 또는 권한 있는 대리인을 통해 인수합니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물품을 인도하지 아니합니다. 1. 낙찰자가 지급해야 하는 총대금을 회사에 **~~하자 없이(삭제)~~** 완납하지 않은 경우 2. (현행과 동일) ⑧ 회사는 낙찰된 **물품을** 낙찰일로부터 낙찰자가 인수할 때까지 **~~물품을(삭제)~~** 무료로 보관합니다. 다만, **본 조 제7항에서** 정한 기간이 초과된 이후에는 낙찰자가 그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. ⑨ 낙찰자가 회사에 **본 조 제3항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** 대금을 완납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위 기간 이내에 물품을 인수하지 않은 경우, 낙찰자는 매 물품마다 위 기간이 초과된 날로부터 인수될 때까지 보관료(당사가 운영하고 있는 보관을 위한 창고의 1일 이용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), 보관이 이루어지는 창고까지의 운송수수료, 보험수수료 등을 부담합니다. ⑩ (현행과 동일) 제20조 (운송과 보험) ① (현행과 동일) ② 위탁자는 … (중략) … 위탁자의 책임과 비용 부담 하에 **보험가입 업무를** 대행할 수 있습니다. ③ ~ ④ (현행과 동일) 제21조 (응찰자와 **낙찰자의** 의무) ① (현행과 동일) ② 물품은 경매 시점에 '있는 그대로' 출품하므로, 응찰자는 경매 이전에 물품의 훼손 그리고 또는 복원을 포함한 **경매대상 물품**의 상태 및 경매도록 등에 제공된 사항에 대해 시연, 착용, 관찰, 문의 등을 통해 상세히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. ③ **회사는** 사이트 또는 전시회에서 물품의 상태 및 속성과 관련해 제공하는 설명과 물품이미지(도판)에 대하여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… (생략) … ④ (현행과 동일) **제5장 렌탈 서비스의 이용** 제22조 (렌탈 서비스의 내용) ① 회사는 공동구매 서비스 또는 조각거래 서비스를 통하여 구입이 완료된 물품에 관하여, **물품소유자들로부터** 권리를 위임 받아 별도 렌탈이용자와 물품을 유료 또는 무료로 렌탈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. ② 회사는 공동구매 서비스로 구입이 **완료되어 회사로 입고가 완료된** 물품들에 한해서만 렌탈 서비스를 진행합니다. ③ 렌탈이용자와 회사가 유료로 렌탈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하며, 이 경우 회사는 발생한 수익 중 회사의 **서비스 관리비 및 세금을** 제한 나머지 금액을 물품소유자가 보유한 소유권의 비율에 비례하여 예치금으로 지급합니다. ④ **본 조에 따라 부과되는 서비스관리비는 회사가 물품소유자의 대리인으로서 렌탈이용자와 렌탈계약을 체결하는 등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취하는 위탁수수료이며, 회사가 물품소유자를 대신하여 물품을 운용하는 대가로 수취하는 운용보수가 아닙니다.**

제 23 조 (물품의 전시사용료 및 비용)	제23조 (물품의 전시사용료 및 비용)
①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운송비용은 렌탈이 진행될 경우 설치, 철수 시 부과되는 비용(총 2 회)이며 회사에서 선납처리 후 렌탈이용자에 후 청구하여 비용을 납부합니다. 설치비용 및 설치 시 운송비용은 첫 달 **렌탈비용이** 부과되는 시점에 함께 청구되며 철수비용 및 철수 시 운송비용은 **계약기간의 마지막 달 렌탈비용에 청구됩니다.**	② 운송비용은 렌탈이 진행될 경우 설치, 철수 시 부과되는 비용(총 2회)이며, 회사에서 선납처리 후 렌탈이용자에 후 청구하여 비용을 납부합니다. 설치비용 및 설치 시 운송비용은 첫 달 **전시사용료가** 부과되는 시점에 함께 청구되며, 철수비용 및 철수 시 운송비용은 **전시기간 종료일 이전에 회사가 별도로 청구합니다.**
③ 보험료는 **전시공간의 렌탈이 시작부터 종료까지의** 보험가입비용을 말합니다. 이 경우 보험가입 주체는 회사이며 주소는 전시공간 입니다. 보험료는 첫 달 렌탈비용이 부과되는 시점에 함께 청구됩니다. 회사에서 렌탈하는 모든 물품**은 보험가입이 의무화이며, 렌탈작품** 총액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.	③ 보험료는 **렌탈 서비스의 개시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의** 보험가입비용을 말합니다. 이 경우 보험가입 주체는 회사이며 주소는 전시공간입니다. 보험료는 첫 달 전시사용료가 부과되는 시점에 함께 청구됩니다. 회사에서 렌탈하는 모든 물품**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, 렌탈 대상 물품** 총액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.
④ 전시 사용료는 전시공간의 물품 전시 및 사용의 대가**로서** 전시사용료를 매 월 지불해야 합니다.	④ 전시사용료는 **렌탈 대상 물품의** 전시 및 사용의 **대가이며, 렌탈이용자는 회사에게** 전시사용료를 매월 **선납 방식으로** 지불해야 합니다.
⑤ 전시 사용료가 한 달 이상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물품을 철수하며,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가 됩니다. 또한 연체 가산수수료(전시사용료의 3%)가 매 월 발생합니다.	⑤ 전시사용료가 한 달 이상 납부되지 않을 경우,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물품을 철수하며,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됩니다. **또한 연체 가산수수료(전시사용료의 3%)가 매일 일할 가산됩니다.**
⑥ (신설)	⑥ **기타 약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및 상이한 내용은 회사와 렌탈이용자가 체결하는 렌탈계약서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.**
제 24 조 (렌탈이용자의 의무)	제24조 (렌탈이용자의 의무)
① (생략)	① (현행과 동일)
② 제 1 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간 이견이 있는 경우 회사는 회수된 물품의 진위 **여부를 가리기 위해**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회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구할 수 있습니다.	② 제1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간 이견이 있는 경우 회사는 회수된 물품의 진위 **여부 및 컨디션에 대한 검토를 위해**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회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구할 수 있습니다.
③ 물품인수증 서명 전(**물품 설치 렌탈 당일**) 물품의 하자 또는 훼손을 발견한 경우, **전시공간은**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. 물품인수증 서명 전 발생한 하자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물품의 전시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 해당 물품은 회사에 반환됩니다.	③ 물품인수증 서명 전(**렌탈 대상 물품의 설치 당일**) 물품의 하자 또는 훼손을 발견한 경우, **렌탈이용자는**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. 물품인수증 서명 전 발생한 하자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물품의 전시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 해당 물품은 회사에 반환됩니다.
④ 회사는 보험사와 **렌탈이용자와의** 별도 합의에 따라 렌탈이용자 명의로 물품에 대한 보험계약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렌탈이용자는 보험사와 계약 후 해당 보험증서를 회사에 **지급하여야** 합니다.	④ 회사는 보험사와 **렌탈이용자 사이의** 별도 합의에 따라 렌탈이용자 명의로 물품에 대한 보험계약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렌탈이용자는 보험사와 계약 후 해당 보험증서를 회사에 **제출하여야** 합니다.
⑤ 렌탈이용자는 회사와 별도 합의에 따라 매월 일시를 정하여 회사가 **전시목적물을**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합니다.	⑤ 렌탈이용자는 회사와 별도 합의에 따라 매월 일시를 정하여 회사가 **렌탈 대상 물품을**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합니다.
⑥ **전시공간에서 외부인으로 인해** 물품이 훼손되는 경우, 그 책임은 렌탈이용자가 부담합니다.	⑥ **전시공간에 출입하는 외부인 기타 제3자로 인해 렌탈 대상** 물품이 훼손되는 경우, 그 책임은 렌탈이용자가 부담합니다.
제 25 조 (회사의 권리 및 책임 한계)	제25조 (회사의 권리 및 책임 한계)
① (생략)	① (현행과 동일)
② 물품을 회사 내 갤러리 및 수장고에 보유, 전시 중일 때에는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고 물품을 관리합니다.	② **회사는(삭제)** 물품을 회사 내 갤러리 및 수장고에 보유, 전시 중일 때에는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고 물품을 관리합니다.
제 26 조 (회원 렌탈 수익금 안내)	제26조 (회원 렌탈 수익금 안내)
① (생략)	① (현행과 동일).
② 회사는 렌탈이용자로부터 수취한 전시사용료 중 회사의 **서비스관리비를** 제한 나머지 금액을 물품소유자가 보유한 소유권의 비율에 비례하여 예치금으로 지급합니다.	② 회사는 렌탈이용자로부터 수취한 전시사용료 중 회사의 **서비스관리비 및 세금을** 제한 나머지 금액을 물품소유자가 보유한 소유권의 비율에 비례하여 예치금으로 지급합니다.
③ 회사는 **필요한 경우 플랫폼이용료를 신설, 변경할 수 있으며**,	③ 회사는 구체적인 전시사용료, 서비스관리비 및 제세금에 관한

구체적인 전시사용료, 서비스관리비 및 제세금에 관한 **사항, 신설 또는 변경사항은**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화면의 <공지사항> 란을 통하여 공지합니다.	**사항을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화면의 <공지사항> 란을 통하여 공지합니다. 또한, 회사는 필요한 경우 사용료, 관리비 또는 비용 항목을 신설, 변경할 수 있으며, 이를**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화면의 <공지사항> 란을 통하여 공지합니다.
제 6 장 조각거래 서비스	**제6장 조각거래 서비스**
제 27 조 (조각거래 서비스 플랫폼이용료) ① 회사는 조각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플랫폼이용료를 **부과합니다.** ② 제 1 항의 플랫폼이용료에는 물품소유자에게 제공하는 판매촉진 서비스에 관련한 제반 **비용을** 포함될 수 있습니다. ③ (생략) ④ 플랫폼이용료는 회원의 등급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⑤ (신설)	제27조 (조각거래 서비스 플랫폼이용료) ① 회사는 조각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플랫폼이용료를 **수수료로 부과합니다.** ② 제1항의 플랫폼이용료에는 물품소유자에게 제공하는 판매촉진 서비스에 관련한 제반 **비용이** 포함될 수 있습니다. ③ (현행과 동일) ④ 플랫폼이용료는 회원의 등급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**⑤ 본 조에 따라 부과되는 플랫폼이용료는 회사가 조각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회원으로부터 조각거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가로 수취하는 위탁수수료에 해당합니다.**
제 28 조 (조각거래 이용 관련 유의사항) ① ~ ④ (생략)	제28조 (조각거래 이용 관련 유의사항) ① ~④ (현행과 동일)
제 29 조 (조각거래 물품의 귀속) ① 물품소유자는 소유권의 비율에 따라 **해당 물품을** 공유합니다. ② ~④ (생략) ⑤ **회사의 파산 등의 사유로 물품을 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품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분배합니다.**	제29조 (조각거래 물품의 귀속) ① 물품소유자는 소유권의 비율에 따라 **물품을** 공유합니다. ② ~④ (현행과 동일) **⑤ 조각거래 서비스를 통하여 물품을 구매함에 따라 회원에게 제공되는 권리증(CERTIFICATE OF OWNERSHIP)은 유가증권 기타 어떠한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으며, 위 권리증은 회원이 약관 및 유의사항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공동구매 서비스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였음을 확인하는 문서에 해당합니다. 또한, 회사는 권리증을 보유(보관)하고 있는 자를 물품의 소유자로 간주하거나 추정하지 않으며, 물품소유자는 권리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.**
제 30 조 (조각거래 서비스 수수료) **① 회사는 조각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합니다.** **② 제 1 항의 서비스 수수료에는 물품소유자에게 제공하는 판매촉진 서비스에 관련한 제반 비용을 포함될 수 있습니다.** **③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수수료를 신설, 변경할 수 있으며, 신설 또는 변경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화면의 <공지사항>란을 통하여 공지합니다. 변경된 수수료는 공지 후 7 일이 지난 후에 거래되는 물품부터 적용됩니다.**	제 30조(삭제)
제 7 장 아트몰 서비스의 이용	**제7장 아트몰 서비스의 이용**
제 31 조 (생략)	제31조 (현행과 동일)
제 32 조 (계약의 성립) ① 회사는 **전조와 같은** 구매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	제32조 (계약의 성립) ① 회사는 **제32조에 따른** 구매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또한,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

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 합니다. 1. ~3. (생략) ② 회사의 승낙이 **제 36 조 1 항의** 수신확인통지형태로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. ③ (생략) 제 33 조 ~ 제 35 조 (생략) 제 36 조 (환급) 회사는 회원이 구매 신청한 아트상품 **등이**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**제공을 할**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아트상품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7 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. 제 37 조 (생략) 제 38 조 (청약철회의 **효과 등의 효과**) ① ~③ (생략) **제 8 장 회원정보의 보호 및 관리** 제 39 조 ~ 제 42 조 (생략) **제 9 장 면책조항 등** 제 43 조 (위탁자의 보증 및 의무) ① ~③ (생략) ④ 위탁계약이 성립된 물품에 **대하여 회사는** 홈페이지와 관련**모든** 자료 (홈페이지, 전자우편, 문자메세지, 스마트폰 앱, 리스트북, 브로셔, 컨디션리포트, 제안서, 리서치자료, 경매장의 스크린, 홍보물, 광고물, 인쇄물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)에 회사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권리를 갖습니다. ⑤ 위탁된 물품의 진위여부, 거래의 불법성 여부 및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위탁 계약된 **위탁물품을** 판매하지 않을 수 있고, (생략) 제 44 조 (회사의 면책) ① (생략) ②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공동구매 서비스의 **물품과** 경매 서비스의 **물품에** 대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추정가 및 그 외 물품에 관한 보조설명은 참고를 위한 설명일 뿐 회사에서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는 내용이 아니며, 대외적으로 인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 ③ ~⑦ (생략) 제 45 조 ~ 제 47 조 (생략) **부 칙** 1. (시행일) 본 약관은 2020 년 4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.	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 합니다. 1. ~3. (현행과 동일) ② 회사의 승낙이 **제34조 제1항의** 수신확인통지 형태로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. ③ (현행과 동일) 제33조 ~ 제35조 (현행과 동일) 제36조 (환급) 회사는 회원이 구매 신청한 아트상품 **등을**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**제공할**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아트상품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. 제37조 (현행과 동일) 제38조 (청약철회의 **효과 등**) ① ~③ (현행과 동일) **제8장 회원정보의 보호 및 관리** 제39조 ~ 제42조 (현행과 동일) **제9장 면책조항 등** 제43조 (위탁자의 보증 및 의무) ① ~③ (현행과 동일) ④ **회사는** 위탁계약이 성립된 물품에 **대한 정보를** 홈페이지와 관련 **제반** 자료(홈페이지, 전자우편, 문자메세지, 스마트폰 앱, 리스트북, 브로셔, 컨디션리포트, 제안서, 리서치자료, 경매장의 스크린, 홍보물, 광고물, 인쇄물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)에 회사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권리를 갖습니다. ⑤ 위탁된 물품의 진위여부, 거래의 불법성 여부 및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위탁 계약된 **물품을** 판매하지 않을 수 있고, (생략) 제44조 (회사의 면책) ① (현행과 동일) ②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공동구매 서비스의 **대상 물품과** 경매 서비스의 **대상 물품에** 대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추정가 및 그 외 물품에 관한 보조설명은 참고를 위한 설명일 뿐 회사에서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는 내용이 아니며, 대외적으로 인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 ③ ~⑦ (현행과 동일) 제45조 ~ 제47조 (현행과 동일) **부 칙** 1. (시행일) 본 약관은 2022년 [5]월 [1]일부터 시행됩니다.